

속초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3
----------	-----

제출년월일 : 2005. 3. .

제 출 자 : 속 초 시 장

1. 제안이유

-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시세조례를 개정하여 시세의 부과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규정을 삭제(안 제3조)
- 나.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및 납기를 변경함(안 제23조 내지 제32호)
- 다. 1,500㎡ 초과 1,600㎡ 이하 자동차세 세율을 ㎡당 200원에서 140원으로 인하(안 제37조)
- 라. 주행세의 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인상(안 제40조의3)
- 마. 시행령으로 담배소비세의 조정세율을 적용할 경우 그 조정세율을 담배소비세 세율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
- 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됨에 따라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납기, 세율을 변경함(안 제83조 내지 제93조)
- 사. 농업소득세의 과세를 5년간 중단함(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별지첨부
- 입법예고(2005.01.28~02.16) 결과 : 의견없음
-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첨부
- 행자부표준안접수 : 2005. 1. 17(표준안 생략)

속초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23조중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를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5조(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6조중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을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세율) ①재산세의 세율은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3
1억원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이하	1,000분의 2
2억원초과 10억원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3
10억원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4

다. 분리과세대상

-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 건축물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시 지역안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3. 주택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

의 40

나. 가목이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4,000만원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3
1억원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5

4. 선박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제27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1(세율적용)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7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7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

③시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제28조제7호 내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8.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제29조제1항중 “법 제184조”를 “법 제186조”로 한다.

제30조의 제목과 본문중 “건축물”을 “부동산”으로 한다.

제32조의 제목을 “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로 하고 제1호내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되었을 때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

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가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제37조제1항제1호의 <표>중 “1,500시시이하”를 “1,600시시이하”로 한다.

제40조의3제1항중 “1,000분의 175를 1,000분의 215”로 한다.

제5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5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

제2장 제7절 종합토지세 규정(제71조 내지 제82조)을 삭제한다.

제8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3조(납세의무자)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5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제86조제1항중 “토지 또는 건축물”을 “토지·건축물 및 주택”으로 하고 동

조 제2항중 “재산세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과세대장”을 “재산세과세대장”으로 한다.

제87조중 “토지 또는 건축물”을 “토지·건축물 및 주택”으로 한다.

제8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9조(과세표준)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0조(과세기준일과 납기)①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도시계획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③시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 징수 할 수 있다.

제91조중 “1,000분의 2”를 “1,000분의 1.5”로 한다.

제92조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93조제1항중 “건축물”을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하고, “비과세건축물”을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하고, “과세건축물”을 “과세건축물 및

주택”으로 하며 동조 제3항중 “법 제192조”를 “법 제194조”로 하고 동조 제4항중 “법 제234조의21”을 “법 제194조”로 하고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94조중 “재산세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과세대장 등”을 “재산세과세대장”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제2장제4절의 규정(제41조 내지 제51조)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안)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3조(세목) ① (생략) ②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략) 8. 종합토지세 ③ (생략)	제3조(세목)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7. (현행과 같음) 8. <삭제> ③ (현행과 같음)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으로 삭제
제23조(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시내에 선적항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한다.	제23조(과세대상 등)-----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 ----- ----- ----- ----- ----- 一.	재산세의 과세대상에 토지를 포함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과세대상을 조정
제24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권리의 양도·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에 등재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4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재산세과세대에 등재된 자에서 사실상의 소유자로 변경하고 기존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 규정인 종중 토지 등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재산세 규정에 명시함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④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과세대상 물건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 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⑥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 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25조(과세표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5조(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재산세의 과표가 기존의 원가계산방식에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과 토지는 그 공시된 가액으로 결정되므로 과표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비율로 조정
제26조(중과세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26조(중과세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 ----- ----- ----- -----.	지방세법의 조문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27조(세율) ①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건축물 (1) 주택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이하 1,000분의 3 1,200만원초과 3만6천원+1,200만원 1,600만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1,600만원초과 5만6천원+1,600만원 2,200만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2,200만원초과 11만6천원+2,200만원 3,000만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30 3,000만원초과 36만6천원+3,000만원 4,000만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50 4,000만원초과 85만6천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70 (2) 골프장·별장·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그 가액의 1,000분의 50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 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 역내의 공장용 건축 물 그 가액의 1,000 분의 6 (4) 제1목 내지 제3목 이 외의 건축물 그 가액의 1,000분의 3	제27조(세율)①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초과 10만원+5,000만원 1억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이하 1,000분의 2 2억원초과 40만원+2억원 10억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 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 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 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 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 분의 2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와 통합됨에 따라 재산세의 세율에 토지에 대한 세율을 규정하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됨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 중 종합 및 별도합산의 경우 기존의 9단계 누진세율에서 3~4단계 구간으로 축소하여 세율을 낮추고 또한 전·답 등에 대한 분리과세의 세율을 낮춤 주택에 대한 재산세도 기존 6단계 누진세율에서 3단계로 구간을 축소하고 세율을 낮춤 기타 기존의 과표가 변하지 않는 선박에 대한 재산세율은 현행유지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2. 선박 (1) 고급선박 그 가액의 1,000분의 50 (2) 제1목이외의 선박 그 가액의 1,000분의 3 3. 항공기 그 가액의 1,000분의 3	2. 건축물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시 지역안에서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3. 주택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이외의 주택 <table> <tr> <td><과세표준></td> <td><세율></td> </tr> <tr> <td>4,000만원이하</td> <td>1,000분의 1.5</td> </tr> <tr> <td>4,000만원초과</td> <td>6만원+4,000만원</td> </tr> <tr> <td>1억원이하</td> <td>초과금액의 1,000분의 3</td> </tr> <tr> <td>1억원초과</td> <td>24만원+1억원</td> </tr> <tr> <td></td> <td>초과금액의 1,000분의 5</td> </tr> </table> 4. 선박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과세표준>	<세율>	4,000만원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초과	6만원+4,000만원	1억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과세표준>	<세율>													
4,000만원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초과	6만원+4,000만원													
1억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신설>	제27조의1(세율적용)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7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7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됨에 따라 전국의 토지를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지 않고 우리시 관내 토지에 대하여만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함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신설>	제27조의2(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 ③시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토지 및 주택의 재산세의 납기가 변동됨에 따라 조문개정 주택은 7월과 9월 건축물, 선박 등은 7월 토지는 9월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28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 제출) 속초시세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생략) <신설>	제28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 제출)----- ----- ----- ----- ----- ----- ----- ----- ----- 1.~6. (현행과 같음) 7. <u>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u> 8. <u>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u>	재산세의 과세 대상에 토지가 추가되고 주택이 별도의 과세 대상이 되므로 조문 정비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29조(공용, 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 등) ①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과세기준일까지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9조(공용, 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 등) ① 법 제186조 ----- ----- ----- ----- ----- ----- -----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인 지방세법 조문개정에 따른 변경
제30조(구관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30조(구관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 ①----- ----- ----- ----- 1. ----- ----- 부동산 2. ----- ----- 부동산 3. -----부동산 4. -----부동산 ②----- -----부동산----- -----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각각의 세목에서 규정하던 감면대상을 재산세에서 일괄 규정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32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 ----- ----- ----- ----- ----- -----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각각의 세목에서 규정하던 신고대상 및 사유를 재산세에서 일괄규정
1. <삭제>	1.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된 때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되었을 때	
4.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될 때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거나 소유자가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주가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의 1대당 연세액은 다음과 같다. 1. 승용자동차 <table><tr><th colspan="2">영업용</th><th colspan="2">비영업용</th></tr><tr><th>배기량</th><th>시시당 세액</th><th>배기량</th><th>시시당 세액</th></tr><tr><td>1,000cc이하</td><td>18원</td><td>800cc이하</td><td>80원</td></tr><tr><td>1,500cc이하</td><td>18원</td><td>1,000cc이하</td><td>100원</td></tr><tr><td>2,000cc이하</td><td>19원</td><td>1,500cc이하</td><td>140원</td></tr><tr><td>2,500cc이하</td><td>19원</td><td>2,000cc이하</td><td>200원</td></tr><tr><td>2,500cc초과</td><td>24원</td><td>2,000cc초과</td><td>220원</td></tr></table> 1의2. ~ 6. (생략) ② (생략)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cc이하	18원	800cc이하	80원	1,500cc이하	18원	1,000cc이하	100원	2,000cc이하	19원	1,500cc이하	140원	2,500cc이하	19원	2,000cc이하	200원	2,500cc초과	24원	2,000cc초과	220원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 -----. 1. 승용자동차 <table><tr><th colspan="2">영업용</th><th colspan="2">비영업용</th></tr><tr><th>배기량</th><th>시시당 세액</th><th>배기량</th><th>시시당 세액</th></tr><tr><td>-----</td><td>-----</td><td>-----</td><td>-----</td></tr><tr><td>1,600cc이하</td><td>-----</td><td>-----</td><td>-----</td></tr><tr><td>-----</td><td>-----</td><td>1,600cc이하</td><td>-----</td></tr><tr><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r></table> 1의2.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	-----	-----	-----	1,600cc이하	-----	-----	-----	-----	-----	1,600cc이하	-----	-----	-----	-----	-----	-----	-----	-----	-----	자동차세중 시시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기준이 1,500cc에서 1,600cc로 조정됨에 따른 조문개정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cc이하	18원	800cc이하	80원																																																							
1,500cc이하	18원	1,000cc이하	100원																																																							
2,000cc이하	19원	1,500cc이하	140원																																																							
2,500cc이하	19원	2,000cc이하	200원																																																							
2,500cc초과	24원	2,000cc초과	220원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	-----	-----	-----																																																							
1,600cc이하	-----	-----	-----																																																							
-----	-----	1,600cc이하	-----																																																							
-----	-----	-----	-----																																																							
-----	-----	-----	-----																																																							
제40조의3 ①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로 한다. ②(생략)	제40조의3 ①----- ----- --- 1,000분의 215-----. ②(현행과 같음)	주행세세율이 변경됨에 따른 조문개정																																																								
제53조(납세의무자) ① ~ ④ (생략) <신설>	제53조(납세의무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면세담배를 유출한 자에게 담배소비세를 추징하게 함에 따른 납세의무자 추가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55조(세율) ① ~ ②(생략) <u><신설></u>	제55조(세율)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 율을 법 제229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	시행령으로 담배소 비세의 조정세율을 적용할 경우 그 조 정세율을 담배소비 세 세율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문개정
제07절 종합토지세 <u><제71조 내지 제82조></u>	<u><삭제></u> <u><삭제></u>	종합토지세가 재산 세에 통합됨으로 인 해 삭제
제83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 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234조의9의 규정 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납 세의무가 있는 자 2. 건축물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납세의무 가 있는 자	제83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 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 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 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 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 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다.	종합토지세가 재산 세에 통합되고 주택 이 건축물과 토지에 서 분리됨에 따라 도시계획세의 납세 의무자 규정을 조정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85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 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 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 5. (생략) <u><신설></u>	제85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주택이 별도의 과세 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른 조문개정
제86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자가 도시계획세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과세기준일까지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6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 ----- ----- -----토지·건축물 및 주택----- ----- ----- ②----- ----- ----- -----재산세과세대장 ----- -----지세과세대장 ----- ----- -----.	주택이 토지와 건축물에서 분리되고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 운영됨에 따라 조문개정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87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과세기준일까지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7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 토지·건축물 및 주택 ----- -----토지·건축물 및 주택----- ----- ----- ----- ----- ----- -----.	주택이 별도의 과세 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조항 문구 정리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 토지·건축물 및 주택----- ----- ----- -----.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89조(과세표준)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가액(법 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 또는 건축물의 가액(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89조(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을 재산세와 같이 규정									
제9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는 다음과 같다.	제9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도시계획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③시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변경된 재산세 납기에 맞춰 도시계획세 납기를 조정									
<table border="1"> <tr> <th>과세 대상</th><th>과세 기준일</th><th>납 기</th></tr> <tr> <td>건축물</td><td>매년 6월 1일</td><td>매년 7월 16일 ~ 7월 31일</td></tr> <tr> <td>토지</td><td>매년 6월 1일</td><td>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td></tr> </table>	과세 대상	과세 기준일	납 기	건축물	매년 6월 1일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토지	매년 6월 1일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		
과세 대상	과세 기준일	납 기									
건축물	매년 6월 1일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토지	매년 6월 1일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91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2로 한다.	제91조(세율)----- -----1,000분의 1.5-----.	과표변경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증가를 막기위하여 세율 조 정
제92조(납세고지 및 부과징 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 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 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 세 및 종합토지세의 부과징 수의 예에 의한다.	제91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재산 세----- -----재 산세----- -----.	종합토지세가 재산 세에 통합됨에 따라 문구수정
제93조(신고의무)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의 건 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 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 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 일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3조(신고의무)①----- -----건축물 및 주택 ----- ----- ----- ----- -----.	종합토지세가 재산 세에 통합되고 주택 이 토지와 건축물에 서 분리됨에 따라 조문개정
1.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 축한 때	1. 건축물 및 주택 ----- -----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2. 건축물 및 주택 ----- -----	
3.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 축물로 된 때	3.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 주택---과세 건축물 및 과 세주택으로---	
4.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 축물로 된 때	4.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 주택으로---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 적을 증감한 때	5. 건축물 및 주택 ----- -----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가 주소, 거소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건축물 및 주택 ----- -----	

[illegible]

관 계 법 령

지방세법

第37條(納稅管理人) ①納稅義務者 또는 特別徵收義務者가 納稅地에 住所 또는 居所를 두지 아니할 때에는 納稅에 關한 事項을 處理하기 爲하여 納稅管理人을 定하여 申告하여야 한다.

②納稅管理人을 變更할 때에도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이 法中 이에 關하여 特別한 規定이 있는 것에 對하여는 例外로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依한 申告가 없을 때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納稅義務者 또는 特別徵收義務者の 財産이나 事業의 管理人을 納稅管理人으로 指定할 수 있다.

제111조(課稅標準)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취득당시의 價額은 取得者가 신고한 價額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申告價額의 표시가 없거나 그 申告價額이 다음 各號에 정하는 時價標準額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時價標準額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第112條(稅率) ①取得稅의 標準稅率은 取得物件의 價額 또는 年賦金額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不動産 등을 취득하는 경우(別莊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取得稅率은 第1項의 稅率의 100分の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場은 그 施設을 갖추어 體育施設의설치·이용에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體育施設業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別莊·高級娛樂場에 附屬된 土地의 境界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建築物 바닥면적의 10倍에 해당하는 土地를 그 附屬土地로 본다.

1. 別莊 : 住居用 建築物로서 상시 住居用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休養·避暑·慰樂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建築物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 경우 別莊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2. 골프場 : 體育施設의설치·이용에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한 會員制골프場用 不動産중 區分登錄의 대상이 되는 土地와 建築物

3. 高級住宅 : 住居用 建築物 또는 그 附屬土地의 면적과 價額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建築物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場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附帶施設을 設置한 住居用 建築物과 그 附屬土地. 다만, 住居用 建築物을 취득한 날부터 30日 이내에 住居用이 아닌 用途로 사용하거나 高級住宅이 아닌 用途로 사용하기 위하여 用途變更工事に 着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高級娛樂場 : 賭博場·遊興酒店營業場·特殊沐浴場 기타 이와 유사한 用途에 사용되는 建築物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築物과 그 附屬土地

5. 高級船舶 : 非業務用 自家用 船舶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船舶

6. 삭제 <2000.12.29>

③首都圈整備計劃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過密抑制圈域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本店 또는 主事務所의 事業用 不動産(本店 또는 主事務所用 建築物을 新築 또는 増築하는 경우와 그 附屬土地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同法 同條의 規定에 의한 過密抑制圈域(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産業團地·誘致地域 및 都市計劃法の 적용을 받는 工業地域을 제외한다)안에서 工場을 新設 또는 増設하기 위하여 事業用 課稅物件을 취득하는 경우의 取得稅率은 第1項의 稅率의 100分の 300으로 한다. 다만, 外國人投資

促進法에 의한 外國人投資企業이 工場을 新設 또는 増設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事業用 課稅物件(同法에 의한 外國人投資比率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工場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行政自治部令으로 정한다.

⑤삭제 <1998.12.31>

⑥道知事は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取得稅의 稅率을 第1項의 標準稅率의 100分の 50의 범위안에서 加減調整할 수 있다.

제183조(納稅義務者)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소유 부동산
3. 별정우체국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
5. 보안림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6.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7. 비상재해구조용·무료도선용·선교구성용과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8.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함이 부적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88조(稅率)제1항제2호

나.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안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그 밖에 關係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住居地域 및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는 地域안의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工場用 建築物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第194條(申告義務)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

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83조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상속자
3. 사실상 중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4.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第229條(稅率)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稅率은 그 稅率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으로 調整할 수 있다.

第232條(課稅免除) ①製造者 또는 輸入販賣業者가 담배를 다음 各號의 用途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消費稅를 免除한다.

1. 輸出
2. 國軍·戰鬪警察·矯正施設警備矯導 및 駐韓外國軍에의 納品
3. 保稅區域에서의 販賣
4. 外航船 및 遠洋漁船의 船員에 대한 販賣
5. 國際航路에 就航하는 航空機 또는 旅客船의 乘客에 대한 販賣
6. 試驗分析 및 研究用
7.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②外國으로부터 入國하는 者등이 搬入하는 담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의 담배에 대하여는 담배消費稅를 免除한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7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83조제2항제2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라 함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되, 상속지

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호주승계인으로 하고, 호주승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